

## 『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』 안내

문서번호 : 당상관 제14호(2019.3.4)

수 신 : 기업체 대표이사 귀하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본 회의소에서는 「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」을 유치하여 회원 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.
3.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(교육훈련위탁계약서, 지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)을 작성하시어 팩스(031-480-8506)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일 시 : '2019. 3. 27(수) ~ 28(목), 09:00 ~ 18:00(16시간)

나. 장 소 : 당진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

다. 교육기관 :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

라. 교육내용 : 당진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/교육란에 세부교육내용 참고

마. 교육대상 :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(선착순 40명)

바. 수 강 료

- 회원업체 130,000원 - 비회원업체 160,000원

※ 비환급과정

※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사. 교육비 입금계좌 : 농협 301-0130-2624-61(예금주 :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)

※ 교육 전 날까지 반드시 입금必, 교육 당일 환불 절대불가, 계산서 협회에서 발행

아. 준 비 물 :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(참석자 본인 2일차 교육 시 지참)

자. 교육이수 시 혜택

-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반영(평가항목 중 교육 이수시 점수 반영)

- 산안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(16H) 수료 인정

- 위험성평가 실시후 인정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%인하

(50명 미만 제조업만 산재예방요율 적용)

차. 문 의 : 당진상공회의소 사업팀 ☎ 041-357-2500

한국안전기술협회 교육팀 ☎ 031-480-8504

카. 기 타 : 제출서류는 당진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/교육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신청방법 : 『교육훈련위탁계약서』 『지원신청서』 『사업자등록증』 팩스(031-480-8506) 송부 신청 후  
접수 확인 전화(031-480-8504)요망 (40명 접수순 마감)

★ 입금시 '회사명' 필히 기재 바람

첨부 : 교육훈련 위탁계약서. 끝.

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이 영



##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(비환급과정)

**◆ 위험성평가란?**  
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,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.

**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**

『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』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점수로 심사하여,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[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] <http://kras.kosha.or.kr> 참조

**② 대상 사업장은?** :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공단에 인정 신청한 사업장

**③ 우수사업 인정절차는?** : 교육(사업주/평가담당자) → 위험성평가실시 → 인정신청 → 현장심사 → 인정결정 → 인정  
 ◆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위험성평가 사업담당자 ☎ (041-570-3423)

**④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, 혜택은?**

- 산재보험료 20% 감면 (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에 한함)
- 인정 유효기간(3년)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정기감독을 유예
- 평가담당자 교육(제조건설16H)이수 시, 해당시간만큼 산안법 제31조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(대체)
-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,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
**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정표 (09:00~18:00, 이틀과정, 16H)**

구분	과 목	세부내용	교육시간
<b>【1일차】</b>			
1	○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(일반)	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-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-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사항 -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	3시간
2	○ 위험성평가 제도개요(전문)	- 제도도입 배경 및 제도개요 -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및 절차 -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 등	2시간
3	○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(전문)	- 위험성평가의 개요 및 단계별 세부절차 -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방법 등	3시간
※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지킴이 역할, 활동내역 입력 및 정보교류 등 추가 안내			
<b>【2일차】</b>			
4	○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(전문)	- 위험성평가 실시기법 - 지원시스템 활용방법 등	4시간
5	○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I(전문)	-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-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및 처리절차 등	4시간

**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비 안내**

교육 과정	교육 시간	교육비	고용보험 환급액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	16시간	- 당진상공회의소 회비 납부업체 : 130,000 - 당진상공회의소 회비 미납부업체: 160,000	비환급

## 「위험성평가」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

사업장명		고용보험관리번호	
대표자		전화번호	- -
		팩스번호	- -
교육참석자 (업무담당자)	성명:	전화번호	- -
		(휴대폰)	- -
소재지	( - )		
소분류업종		근로자수	명

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『위험성평가』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1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(사)한국안전기술협회장 귀하**

<수강료 및 수강료납부계좌>

수강료	입금여부	납부계좌
₩160,000/人	여 / 부	농협 301-0130-2624-61 예금주: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

## 교육 위탁계약서(신청서)

재직사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\_\_\_\_\_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“한국안전기술협회”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	계약내용 및 교육 참가자	가. 계약내용				
	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교육시간	교육인원	1인당교육비
		관리감독자 교육		시간	명	원
		나. 교육 참가자				
		위탁기관	회사명 (법인명)	대표자	소속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	
	주소					
	업태	종목		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			
	계산서 e-mail	상시근로자수				
	다. 교육생 인적사항					
	성명	주민등록번호	부서	직위	핸드폰번호	
제2조	신의 및 성실의무	<p>가.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</p> <p>나. “을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고 수료기준에 부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. 수료기준은 출석률 100%이다.(법정 교육 이수 시간 준수)</p> <p>다. “을”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지정 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한 교육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,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교육과정이 취소되는 경우 “을”이 책임을 진다. (단, 이는 “갑”이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 한하며, “갑”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교육 미이수 시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)</p> <p>라.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연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 없이 교육 불참 및 출석 후 중도 이탈 시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</p> <p>마. “갑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, “을”은 제공받은 정보를 본 교육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바. 수집된 개인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(등록기관의 평가)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 제3자 제공됨.</p>				
		제공 받는자	제공 항목		제공 목적	보유기간
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성명, 교육수료기관, 연령대, 소속회사정보(지역, 업종, 규모), 직위, 전화번호(휴대 및 사무실)		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	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
제3조	해석 및 합의	<p>가.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</p> <p>나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기명 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</p>				

2019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<p><b>갑)</b> 회사명 : 주 소 : 대표자 : (직인)</p>	<p><b>을)</b> 회사명 :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,           타워타워 9층 대표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우 종 현 (직인)</p>
---	--